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3.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11월 9일

나. 발 의 자: 신흥식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3년 11월 14일

라. 상정일자: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3. 11. 27.)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신흥식 의원)

가. 제안이유

○ 공무원 등에 대한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주민권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의 근거를 「지방공무원법」으로 명시함(안 제4조 제1항)

○ 수취액 3천만원 이상 등 중대비위에 대한 신고기한 신설(안 제4조 제2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함에 있어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신고기한)제1항은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근거조항을 기재하여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신고기한)제2항에서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년,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년이 되는 날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중대 부조리 행위에 대해 신고기한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함.
-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영등포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2008년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임.
  - 안 제4조제1항은 현 조례에서 부조리 신고기한을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하고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 등과 관련된 사항은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는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로 변경함. 이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현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4조제2항은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와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7년 및 15년까지 신고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형법」상 뇌물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의 시효기한에 준하여 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기한을 연장한 것임.
  -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제도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본 개정을 통해 영등포구공직자로 하여금 부조리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50 |
|----------|-----|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 신흥식·우경란·양송이  
이규선·임현호 의원  
(5인)

## 1. 제안이유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 만료일을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주민권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부과 사유의 시효규정을 준용(안 제4조 제1항)
- 나.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비위 신고기한 신설(안 제4조 제2항)

## 3. 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23. 11. 10. ~ 11. 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부조리 신고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년,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년이 되는 날까지 신고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접수된 신고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신고는 <u>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u><br><u>와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u><br><u>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u><br><u>5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u> | 제4조(신고기한) ① 부조리 신고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u>2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u><br><u>까지 한다.</u>                                        |
| <u>&lt;신 설&gt;</u>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u>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u><br><u>에는 7년, 1억 원 이상일 경우</u><br><u>에는 15년이 되는 날까지 신고할</u><br><u>수 있다.</u> |